

과천 지식정보타운 **린 패밀리에**

| 당첨자(예비입주자) 제출서류 / 계약 시 구비서류 |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구비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'상세'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8.13)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	인감증명서	본인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필요 시 추가 구비서류 (해당자)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주민등록표초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재직증명서	본인	-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
	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	대상자	-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 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표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계약 시 구비서류 [11.08(월) ~ 11.13(토)]	계약금 입금 확인서류	본인	-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(당첨자 본인명의 입금) ※현장수납 불가
	인감도장	본인	-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)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- 홈페이지 게시 및 견본주택 비치 예정
제3자 대리신청 시 (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기 서류 외 추가 구비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-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(견본주택 비치) - 대리신청자의 신분증, 인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날인 및 계약은 본인만 가능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

- 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접수일 기준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처리일 기준, 가옥대장 등본 포함)
-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)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 -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 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과천 지식정보타운 **린 패밀리에**

| 당첨자(예비입주자) 제출서류 / 계약 시 구비서류 |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구비서류 (기관추천, 국가유공자)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※ 지역거주요건이 있는 공급대상으로 당첨된 분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8.13)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	인감증명서	본인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필요 시 추가 구비서류 (해당자)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주민등록표초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	대상자	-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 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표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다자녀 가구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 또는 직계비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	-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(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)
	입양관계증명서	본인	-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※ 입양의 경우
노부모 부양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'상세'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-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	피부양 직계존속	-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
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※ 기록대조일을 피부양 직계존속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8.13)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
▶ 당첨자(예비입주자) 제출서류 / 계약 시 구비서류 ▶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								
신혼부부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'상세'로 발급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을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함																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-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																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-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,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																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															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입양의 경우																
생애최초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																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																
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-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																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														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-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「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납부 입증서류」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																
<p>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납부 입증서류 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기관 직인날인 必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서류구분</th> <th>확인자격</th> <th>증빙 제출서류</th> <th>발급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자격 입증서류</td> <td>근로자</td> <td>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 <td rowspan="3">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</td> </tr> <tr> <td>자영업자</td> <td>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(2020.08.14~2021.08.13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</td> <td>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소득세납부 입증서류</td> <td>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</td> <td>※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</td> <td>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/ 세무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(2020.08.14~2021.08.13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※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/ 세무서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																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																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												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(2020.08.14~2021.08.13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												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※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/ 세무서																
계약 시 구비서류 [11.08(월) ~ 11.13(토)]	계약금 입금 확인서류	본인	-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(당첨자 본인명의 입금) ※ 현장수납 불가																
	인감도장	본인	- 기존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)																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															
11.13(토)	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- 홈페이지 게시 예정																
제3자 대리신청 시 (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)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기 서류 외 추가 구비사항 -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-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(건본주택 비치) - 대리신청자의 신분증, 인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날인 및 계약은 본인만 가능 														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

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(등기접수일 기준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처리일 기준, 가족대장 등본 포함)

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함입니다.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)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•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
-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
•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
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